

[사 건 명] 행심 2017 - 35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내 봉사 4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가해에 따른 『학교내 봉사 4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는 ☆☆☆☆☆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하여 2017. 8.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학교에서 봉사 4시간과 학생특별교육 4시간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7. 8. 2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7. 9.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객관적 사실확인을 게을리하거나 해태하는 등 적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에 대한 사전협의나 통보가 없어서 청구인은 출석하여 제대로 된 진술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녹취본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를 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청구인은 ☆☆학교 ◇학년으로서 폭력에 대한 사리분별력 및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이에 ‘고의’를 가지고 □□□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상호간에 장난을 치다가 □□□가 청구인을 때리면서 서로 등짝을 때리는 정도의 다툼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정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측의 합의와 상관없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의한 사안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는 내용과 개최 사실을 여러 번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녹취의 내용을 설명하였던 만큼, 절차적 위법이 없다.

나. 청구인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진술서 등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 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17. 3. 이후에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 ♠♠♠과 함께 □□□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 7. 1. 경 □□□의 엉덩이를 때렸다.
- 다. 청구인은 2017. 7. 19. 경 □□□와 부딪힌 후에 □□□를 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고, 청구인이 아이스티 병을 들고 있던 # # #의 팔을 잡고 아이스티 병으로 □□□를 툭툭쳤다.
- 라. 청구인의 담임선생님이 2017. 7. 20. 및 2017. 7. 25.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관련자, 목격자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 마. 피청구인은 가해자들 대표로 합의를 진행중이던 ●●●의 아버지에게 학폭위가 개최되기 6일 전인 2017. 8. 17.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어도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 학폭위가 개최된다는 점을 문자로 통보하고, 2017.

8. 21.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폭위 참석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문자를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성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객관적 사실확인을 게을리하거나 해태하는 등 적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에 대한 사전협의나 통보가 없어서 청구인은 출석하여 제대로 된 진술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녹취본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를 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2학년 담임교사가 2017. 7. 20. 경과 2017. 7. 25. 경 청구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과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2017. 8. 23. 전인 2017. 8. 17. 경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있어도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문자를 통보한 점, 2017. 8. 21. 경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학생들의 확인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통보한 점, 청구인은 2017. 8. 17. 진술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학생 중 ▷▷▷는 2017. 8. 23. 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의 부(父)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출석하여 진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녹취파일의 주요부분이 이 사건 폭력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청구인과 □□□의 모(母)와 합의에 대한 내용이고 위원들에게 녹취내용을 설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절차 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술권을 침해하였거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녹취록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청구인은 ☆☆학교 ◇학년으로서 폭력에 대한 사리분별력 및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이에 ‘고의’ 를 가지고 □□□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상호간에 장난을 치다가 □□□가 청구인을 때리면서 서로 등짝을 때리는 정도의 다툼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정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는 개학 후 청구인뿐만 아니라 ▷▷▷, ♣♣♣으로부터 폭행을 계속 당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위 □□□의 진술서의 작성경위를 보면, □□□가 피청구인의 ※※※ 교사 입회하에 □□□의 모친과 함께 구술대화를 하여 □□□의 모가 작성한 후에 □□□가 확인한 내용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청구인으로부터의 계속된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가해학생 중 한명인 ▷▷▷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하여 2017. 7. 19. 경 청구인뿐만 아니라 ♣♣♣, ▷▷▷ 등이 □□□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담임 선생님의 청구인을 포함한 학생들에 대한 상담일지 상에 나타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 ♣♣♣과 함께 지속적으로 □□□를 폭행하여 왔고, 2017. 7. 1. 경 □□□를 폭행하였으며, 2017. 7. 19. 경 ▷▷▷, ♣♣♣, &&&, ◎◎◎과 함께 □□□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하게 청구인의 행위가 장난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재량권일탈, 남용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양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처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